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899
----------	------

발의연월일 : 2017. 8. 31.

발의자 : 민홍철 · 주승용 · 황주홍
이훈 · 정인화 · 윤후덕
조정식 · 강훈식 · 김해영
소병훈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지역·지구 등의 지정 또는 행위제한 신설 이후 그 관리·운용의 적정성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제도가 미흡하고,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폐지·신설된 지역·지구 현황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설된 지역·지구 등에 관하여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지구등의 조정·폐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가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도록 하며, 동 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지구등의 범위에 관한

별표의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신설된 지역·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 등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게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지구등의 조정·폐지, 존속기한 설정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 나. 사업지구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지구 지정·변경·해제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사업지구의 근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 다.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 라.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한 정보제공 항목에 행정구역별 지역·지구 등의 중첩 지정 현황을 추가함(안 제12조제2항제1호).
- 마. 국토교통부장관의 제도개선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지구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 현황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사.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신설·폐지되거나 행위제한이 없는 지역·지구등을 추가 또는 삭제하는 등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에 관한 별표의 규정을 정비함(별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직권심의 및 권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등이 각 호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지역·지구등을 신설하였거나 신설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지역·지구등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준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행위제한 강화등을 한 경우: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지역·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등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역·지구등 또는 행위제한의 폐지·조정, 존속기한·재검토기한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지구등”을 “지역·지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지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지구 지정·변경·해제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변경을”을 “변경 및 해제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지역·지구등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거나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을 신설 또는 강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내용”을 “내용(행정구역별 지역·지구등의 중첩 지정 현황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제도개선 협의 및 이행촉구 등) ①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도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단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행실적 점검·평가의 주기, 방법, 절차 및 이행 촉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역·지구등 및 행위제한 관련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에 관한 사항

제22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역·지구등 및 행위제한 관련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에 관한 점검·평가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기초조사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기초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 현황
2.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 제한의 내용 및 수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지구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초조사의 방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 · 지구등(제5조제1호 관련)

연번	근거 법률	지역 · 지구등의 명칭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가축사육제한구역
2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간척지활용사업구역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개발제한구역
4	「건축법」 제18조	건축허가 · 착공제한지역
5	「건축법」 제60조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지역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경제자유구역
7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제1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8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제2호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9	「골재채취법」 제34조	골재채취단지
10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11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공공주택지구
1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	특별관리지역
13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소음대책지역
14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종 구역
1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종 구역
16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종 구역
17	「공항시설법」 제2조	공항 · 비행장개발예정지역
18	「공항시설법」 제2조	장애물 제한표면
19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지
20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단지
21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교육환경보호구역
2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호	절대보호구역

23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	상대보호구역
2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6조	대회관련시설 설치 · 이용지역
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도시 · 군계획시설의 부지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도시지역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주거지역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	상업지역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	공업지역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	녹지지역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	관리지역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	보전관리지역
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나목	생산관리지역
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다목	계획관리지역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	농림지역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	자연환경보전지역
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	경관지구
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	미관지구
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	고도지구
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	방화지구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	방재지구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6호	보존지구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7호	시설보호지구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	취락지구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9호	개발진흥지구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0호	특정용도제한지구
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도시자연공원구역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시가화조정구역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수산자원보호구역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지구단위계획구역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성장관리방안수립지역
5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5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5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5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5조	통제보호구역
5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5조	제한보호구역
5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6조	비행안전구역
5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6조	비행안전 제1구역
5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6조	비행안전 제2구역
6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6조	비행안전 제3구역
6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6조	비행안전 제4구역
6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6조	비행안전 제5구역
6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6조	비행안전 제6구역

6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7조	대공방어협조구역
6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구역
66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6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68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69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붕괴위험지역
7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	기업도시개발구역
7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구역
7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건축허가제한지역
7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7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75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정비구역
76	「농어촌정비법」 제9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
77	「농어촌정비법」 제82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78	「농어촌정비법」 제94조 및 제95조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79	「농어촌정비법」 제101조	마을정비구역
80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
81	「농지법」 제28조제1항	농업진흥지역
82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	농업진흥구역
83	「농지법」 제28조제2항제2호	농업보호구역
84	「도로법」 제25조	도로구역
85	「도로법」 제28조	입체적도로구역
86	「도로법」 제40조	접도구역
87	「도로법」 제45조	도로보전입체구역
88	「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
8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구역

9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9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재정비촉진지구
92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93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특정도서
94	「동 · 서 ·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7조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구역
9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마리나항만구역
96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절대보전무인도서
97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준보전무인도서
9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이용가능무인도서
9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4조	문화산업단지
100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지정문화재
101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02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제74조	보호구역
103	「문화재보호법」 제32조 및 제74조	가지정문화재
104	「문화재보호법」 제53조	등록문화재
10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물류단지
10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107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백두대간보호지역
108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	핵심구역
109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	완충구역
110	「사방사업법」 제4조	사방지
111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자연휴양림
112	「산림보호법」 제7조	산림보호구역
11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채종림등

1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시험림
11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산업기술단지
1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산업단지
1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일반산업단지
1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
1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농공단지
1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준산업단지
12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	특수지역
12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공장입지 유도지구
1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공공시설구역
1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녹지구역
1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복합구역
12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산업시설구역
12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지원시설구역
128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보전산지
129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	임업용산지
130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공익용산지
131	「산지관리법」 제9조	산지전용 · 일시사용제한지역
132	「산지관리법」 제25조의3	토석채취제한지역
13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새만금사업지역
134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	소하천구역
135	「소하천정비법」 제4조	소하천 예정지
13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과밀억제권역
13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성장관리권역
138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	자연보전권역
139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140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수목원조성예정지
14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14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143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습지보호지역
144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습지주변관리지역
145	「습지보전법」 제8조제2항	습지개선지역
146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	신항만건설예정지역
14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예정지역
14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14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야생생물 보호구역
150	「어촌·어항법」 제17조	어항구역
15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9조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152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해양박람회특구
15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역세권개발구역
15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연구개발특구
15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1호	주거구역
15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2호	상업구역
15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3호	녹지구역
15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4호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15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5호	산업시설구역
160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제2항제1호	핵심관리구역
161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	완충관리구역
162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구역

163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164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165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166	「온천법」 제5조	온천공보호구역
167	「온천법」 제10조의2	온천원보호지구
168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25조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
169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제27조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
170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 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대회관련시설설치·이용지역
17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 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172	「자연공원법」 제4조	자연공원
173	「자연공원법」 제4조	국립공원
174	「자연공원법」 제4조	도립공원
175	「자연공원법」 제4조	군립공원
176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	공원자연보존지구
177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	공원자연환경지구
178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3호	공원마을지구
179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6호	공원문화유산지구
180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181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생태·경관보전지역
182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제1호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18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제2호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
184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제3호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
185	「자연환경보전법」 제22조	자연유보지역
186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187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	자연휴식지

18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묘지 등 설치 제한지역
189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190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
191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전원개발사업구역
192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193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전통사찰보존구역
194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19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시장정비구역
196	「전파법」 제52조제1항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
19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절대보전지역
19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6조	상대보전지역
19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	관리보전지역
20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0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	생태계보전지구
20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	경관보전지구
20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2조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204	「주차장법」 제12조제6항	노외주차장설치제한지역
20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역개발사업구역
206	「지역문화 진흥법」 제18조	문화지구
207	「지하수법」 제12조	지하수보전구역
208	「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보호지구
209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	청소년수련지구
210	「초지법」 제5조	초지
21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친수구역
21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

213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	토양보전대책지역
21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215	「하천법」 제10조	하천구역
216	「하천법」 제12조	홍수관리구역
21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구역
21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오염행위 제한지역
219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7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22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8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22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222	「항만법」 제2조제4호	항만구역
223	「항만법」 제42조	항만배후단지
224	「항만법」 제56조	항만재개발사업구역
225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해양산업클러스터
22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해양보호구역
22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해양생물보호구역
22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해양생태계보호구역
22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해양경관보호구역
23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시·도해양보호구역
23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시·도해양생물보호구역
23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시·도해양생태계보호구역
23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시·도해양경관보호구역
234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환경보전해역
235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특별관리해역
236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특별대책지역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6조의3(직권심의 및 권고) ①</u></p> <p><u>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등이 각 호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게 할 수 있다.</u></p> <p><u>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지역·지구등을 신설하였거나 신설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지역·지구등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준</u></p> <p><u>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행위제한 강화등을 한 경우: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u></p> <p><u>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u></p>

따른 심의 결과 지역·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등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역·지
구등 또는 행위제한의 폐지·조
정, 존속기한·재검토기한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계획서
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지구등(이하 이 조에서 “사업지구”라 한다)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해당 사업지구에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

	<p><u>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거나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 제한을 신설 또는 강화한 경우에</u>는 해당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 제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에 필요 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 ① (생 략)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 ① (현행과 같음) ----- ----- ----- -----.
②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 ----- ----- -----.
1.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	1. ----- <u>내용(행정구역별 지역·지구등의 중첩 지정 현황을 포함한다)</u>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 ① · ② (생 략)	제13조(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삭 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지구 등의 통합이나 폐합 등을 위한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개정 방안, 지역·지구등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생략)

<신설>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제도개선 협의 및 이행촉구 등) ①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도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단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p><u>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을 촉구 할 수 있다.</u></p> <p><u>③ 제2항에 따른 이행실적 점검·평가의 주기, 방법, 절차 및 이행 촉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제15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제15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지역·지구등 및 행위제한 관련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략) <u><신설></u> 5. (생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22조(토지이용규제평가단)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토지이용규제 평가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 2. (생략) <u><신설></u> 3. (생략) ② · ③ (생략) <u><신설></u>	제22조(토지이용규제평가단) ①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지역·지구등 및 행위제한 관련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에 관한 점검·평가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기초조사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기초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 현황

2.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및 수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지구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초조사의 방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